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3)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일원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별표8 삭제)

다.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규격 변경(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안 별표5)

- (현행)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 → (개정) 반투명으로 통일
- 100리터 삭제, 75리터 신설

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을 환경부 표준규격에 맞게 개정(안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별표3 삭제)

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 수정 및 품목 세분화(안 별표1)

- (현행) 77종 → (개정) 4종 삭제 / 3종 신설 / 12종 기준 수정

바. 플라스틱류 PET병 배출요령 변경(안 별표2)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1.3.26.),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시장이 정하는 분리”를 “별표 2의”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에서 작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1명~2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리터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를 “75리터”로 한다.

-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반투명으로 제작한다.

제15조제2항 중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미시”를 “구미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

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8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5 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공급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u>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u>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u><신 설></u>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별표 2의</u> -----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u>제9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u>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u>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u> 2. <u>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에서 작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1명~2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u>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제6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
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생 략)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
질 등) ① (생 략)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
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
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
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
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봉
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
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
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
깔은 반투명 흰색을 기준으로
하되 10리터, 20리터는 옅은 녹
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루어 작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
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
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
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하
여 반투명으로 제작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미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생략)

③ -----
----- 75리터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미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
-----.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수수료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주방용품			
장농	폭120cm이상1쪽	15,000		식탁	대리석 1㎡이상	15,000	
	폭120cm미만1쪽	10,000			대리석 1㎡미만	10,000	
문갑,화장대	모든규격	3,000			6인이상	7,000	
장식장 (폭또는높이)	1m이상	6,000			6인미만	5,000	
	1m미만	4,000		교자상	대형(4인이상)	2,000	
서랍장	4단이상	4,000			소형(4인미만)	1,000	
	4단미만	2,000		썰크대	1쪽	3,000	
책장 (폭또는높이)	1m이상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1m미만	2,000			높이1m미만	2,000	
신발장	1m이상	6,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2,000	
	1m미만	3,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책상	양수(대형)	5,000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1,000	
	편수(소형)	4,000		식기(세척)건조기	인공건조(동력)	4,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자연건조(무동력)	2,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전자후라이팬	모든규격	2,000	
	4단미만	2,000		가전제품			
옷걸이	스탠드형	2,000		TV	25인치 이상	5,000	
의자	모든규격	2,000			25인치 미만	3,000	
쇼파	4인용이상	10,000		오디오	폭또는높이1m이상	5,000	
	4인용미만	7,000			폭또는높이1m미만	3,000	
	1인용	4,000			스피커1쪽당	2,000	
침대 (메트리스 포함)	더블,퀸사이즈	15,000		냉장고	업소용	15,000	
	싱글	10,000			500 L 이상	10,000	
매트리스	더블,퀸사이즈	8,000			300 L 이상 500 L 미만	6,000	
	싱글	5,000			300 L 미만	4,000	
침대 (돌, 옥, 황토)	2인용	30,000		에어컨,온풍기	264㎡형이상	8,000	
	1인용	20,000			66㎡형 이상 264㎡형 미만	5,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			66㎡형미만	3,000	
탁자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난방용품					높이1m미만	2,000	
난로	높이1m이상	5,000		전자오락기(개입)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2,000			높이1m미만	5,000	
보일러등유류통	1톤당	5,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전기장판, 온수매트	모든규격	4,000					

(수수료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개인용컴퓨터	본체	2,000		거울	1㎡이상	3,000	
	모니터	2,000			1㎡미만	1,000	
	프린터기	2,000		수족관	1㎡이상	10,000	
	키보드	1,000			1㎡미만	6,000	
	스피커(대형)	2,000		카페트, 돛자리	1㎡이상	4,000	
	스피커(소형)	1,000			1㎡미만	2,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변기	양변기	10,000		
복사기	모든규격	15,000		좌변기	5,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비 데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화분	높이 또는 직경 50cm이상	2,000		
세탁기, 건조기	모든규격	5,000		높이 또는 직경 50cm미만	1,000		
악기				이불	솜이불(장당)	2,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홀이불(장당)	1,000	
	어프라이트	15,000		벽시계	대형(1m이상)	5,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중형 (0.5m이상~1m미만)	3,000	
기타						소형 (0.5m미만)	1,000
자전거	어른용	5,000		장판	3㎡당	1,000	
	어린이용	3,000		깨진유리, 항아리	1kg당	1,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보일러	모든규격	5,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욕조	모든규격(대리석외)	5,000	
전화기	모든규격	1,000			모든규격(대리석)	15,000	
액자	1㎡이상	3,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1㎡미만	1,000		폐소화기 (규격기준)	15kg 이상	7,000	
타이어	람외경19인치이상	5,000			7kg~15kg미만	5,000	
	람외경19인치미만	3,000			3.3kg 이상	3,000	
물탱크저수조	1톤당	10,000			3.3kg 미만	2,000	
파티션	2m 이상	5,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2m 미만	4,000		플라스틱장난감	대형(20kg이상)	5,000	
문	유리문	15,000			소형(20kg미만)	1,000	
	철문	5,000			우산	개당	1,000
	실내문	3,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스티로폼 (재활용 불가품)	1㎡미만	15,000		운동기구	런닝머신	10,000	
	1㎡초과0.1㎡마다	1,500			실내자전거	5,000	
	5㎡미만	75,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별표 2】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안 제6조제4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1. 종 이 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 부터 자정(24:00) 까지
4.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 부터 자정(24:00) 까지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5. 플 라 스 틱 류	- 투명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과일, 생선상자 등을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제95-90호)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렌지, 퍼스날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업자에게 배출 -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6. 폐 형 광 등 및 필 름 류	- 폐형광등 - 필름류 포장재	- 배출시 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외피(포장재)를 벗겨서 배출 - 배출 시에는 해당 읍면동의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에 배출 - 깨어진 형광등은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농축산품류등 필름류포장재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름류 포장재만 담아서 배출 - 1회용비닐봉투는 별도 분리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7. 대 형 폐 기 물	가 구 류 , 주 방 용 품 , 가전제품	-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의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8. 음 식 물 쓰 레 기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 비닐, 병뚜껑, 젓가락 등 이물질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	배출일 :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9. 일 반 생 활 쓰 레 기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 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배출 (문전 수거 원칙)	배출일 :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표 (제10조제2항 관련)

종 류	업소이윤(원)	판매가격(원)
봉투 5ℓ	15	150
봉투 10ℓ	30	300
봉투 20ℓ	55	600
봉투 50ℓ	135	1,500
봉투 75ℓ	200	2,250
마대 10ℓ	100	1,000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장 재 일
	담 당	문 태 동
	담 당 자	이 지 희 (480-5204)